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71

발의연월일: 2021. 5. 7.

발 의 자: 박수영 · 권영세 · 김성원

김용판 · 김태호 · 김희곤

서병수・송석준・유경준

이 용・태영호・허은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는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와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심화되는 고령화사회에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감면제도를 추가로 연장하는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현행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개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한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2항).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주택공시가격등"을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주택공시가격등"을 각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 정 안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	제35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
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생	상 주택에 대한 감면)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주택담보노후	②
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	
공된 주택(1가구 1주택인 경우	
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u>2021년 12월 31일</u> 까지 감면한	<u>2024년 12월 31일</u>
다.	.
1. <u>주택공시가격등</u> 이 5억원 이	1.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재산	하 이 조에서 "시가표준액"
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u>이라 한다)</u>
2. <u>주택공시가격등</u> 이 5억원을	2. <u>시가표준액</u>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	
도 <u>주택공시가격등</u> 이 5억원	<u>시가표준액</u>
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	
분의 25를 공제한다.	<u>.</u>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